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2018. 01. 18 제정

2020. 07. 01 개정

2022. 08. 01 개정

2023. 03. 10 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하여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 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에 규정된 사항 이 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기준 및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투자일임"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금융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기본수수료"란 투자일임·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재산 또는 투자자문대상 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④ "성과수수료"란 투자일임·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성과수수료 계산 기간 종료일에 투자자문대상 자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하여 계약 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산정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 ⑤ "기준지표 등" 이라 함은 성과수수료를 수령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지표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을 말한다.
- ⑥ 중도해지수수료란 고객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에 따라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 ① 회사는 수수료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수료는 투자일임재산 및 투자자문대상 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③ 고객에게 부과하는 자문, 일임수수료는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별 수수료율을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책정하되, 자산 규모, 서비스 수준, 인정가능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이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체계)

-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일임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수수료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 지급(이하 '기본수수료형'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3. 성과수수료만을 지급(이하 '성과수수료형'이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 투자자와 정한 바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성과수수료의 수령기준)

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① 성과수수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에 연동하여 산정한다.
- ② 투자일임재산 또는 투자자문대산 자산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운영한다.
- ③ 혼합형 또는 성과형의 경우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낼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통보)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수수료 또는 투자자문수수료(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그 시기, 금액 등 수수료의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절차)

- ①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의 수준은 계약의 특성,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
- ②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 수수료 계산 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 ③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9조(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9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00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 ① 회사는 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법 제58조 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의 제정 및 개정)

이 기준은 경영진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8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